

보복범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taliatory crime

강 맹 진
남부대학교

Kang maeng-jin
Nambu Univ.

요약

피해자 또는 목격자, 참고인 등 범죄관계인의 범죄신고, 증언, 진술 등에 대한 양갈음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보복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보복범죄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 보복범죄, 경찰활동, 증언, 대응책

Abstract

We can define as retaliatory crime avenge crime for crime statement, testimony, state of victimized, witness etc. of criminals related.

In case of Republic of Korea, damages of retaliatory crimes are every year increasing and increasing ratio is high. Nevertheless, opposition for retaliatory is incomplete realities. This study is going to search for the opposition method with scrutinize of regulation for retaliary crimes.

keywords : retaliatory crime; police activity; testimony; countermeasure

I. 서론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대책도 일부 관련 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을 뿐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¹⁾.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보복범죄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I. 사례분석

1. 사례

최근 발생한 두 건의 보복범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014년 9월 22일 3년 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70대 노인에게 2차례 보복상해를 가한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9월 19일 오후 B(77·여)씨가 2011년 4월 자신의 상해 사건에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B씨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끼얹어 2

도 화상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2014년 9월 22일 B씨를 찾아가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두부찰과상을 입히는 등 2차례에 걸쳐 보복상해를 가한 혐의대기.

사례 2)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여성 A씨. 다니던 직장의 상사가 다른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A씨가 형사재판에서 상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그 결과 재판과정에서 상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으며 상사는 구속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상사가 출소 후 A씨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사례 분석

사례 1)과 사례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복범죄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가해자(범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보복범행의 이유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복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의 경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복범죄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고 그 후 범죄로 발전된 것이다. 그런데 보복범죄의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적어도 보복범죄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았어야 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

다. 그러므로 보복범죄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Ⅲ. 문제점과 대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4년 10. 3)와의 대담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범죄연구소 공정식 소장은 두 가지의 보복범죄 형태를 들면서 특정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범죄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를 증언하거나 이런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로 구분하고 가해자가 대부분이 피해자를 우습게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대체로 자기보다 약한 노인들이거나 주로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마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식으로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보복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치졸한 범죄로 규정하였다. 한편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고소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3].

그런데 보복범죄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보복범죄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상황과 가해자 피해자 등의 진술, 가해자 등의 태도를 종합한다면 향후 발생할 범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본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는 하나 수사를 하다보면 일종의 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사과 재판 등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보복범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보복범죄가 예상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보복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제보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범인 나름대로 제보자·목격자 등에 대한 추측까지 보복범죄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복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속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예방은 절대적이라고 판단된다.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4]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1] 강맹진, 범죄예방론, 시보출판사, pp.12-20, 2012.
- [2] 강원도민일보, 2014, 9, 28, pressno@kado.net
<http://www.ahatv.co.kr/news/>
- [3] 최인섭·이순래·조균석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구조서 06-03, pp. 51-52, 2006.
-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목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